

최저임금 고용효과, 누구 말이 맞을까



▲ 지난 7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반발하던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다. 전선을 주도한 건 전문가들이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해 각각의 결과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때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된다. 최저임금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평가받는 미국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미국에서는 5.15달러 수준이던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정최저임금법 논쟁이 한창이었다.

■ 국책연구기관, 최저임금 고용효과 분석 잇따라

최근 국내에서는 전년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

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관련 논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KL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어도 올해 3월까지의 고용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량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3월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측도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KDI측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홍 선임연구위원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감축이나 사업중단 대신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2019~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매년 15.3%씩 인상(최저임금 1만원 도달 기준)될 경우를 가정했다. 이 같은 조건에 따르면 2019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게 최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이상현 국제노동기구 박사는 미국과 형가리의 추정치를 한국 사례에 단순 적용해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최 선임연구위원의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

나 김용성 KDI 부원장은 최저임금이 매년 10% 이상 인상된 국가가 많지 않다면 형가리 사례를 참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가리는 2000~2004년 동안 최저임금을 60% 가까이 인상했다. 이 때문에 김용성 부원장은 형가리 사례가 가장 객관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고용효과 없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는 분석 결과는 차이가 크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효과’에서 미국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한 주에서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 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용 및 실업지표, 노동시간, 음식점 및 주점 등의 업체 수와 폐업, 고용 및 해고 추이 등을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정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7년 시간당 7.5달러에서 2017년 10.5달러로 인상됐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고용자수는 오히려 더 확대됐다는 게 이재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진 2014년부터 이 지역 고용자수가 126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6.5%에서 4.5%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노동계에 힘을 보탰다.

김유선 이사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최저임금 고용효과’ 보고서에서 “2018년 2~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0~12만명 증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마치 최저임금 때문인 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장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경영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부진 우려”

반면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부진이 우려된다 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3일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9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트족이 많은 국내 고용 구조를 고려하면,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고령층에서 고용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료에서 경총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과 임시·일용직의 고용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 감원, 무인화·자동화, 직원을 가족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고용감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사업체 퇴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5월 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근로자 10%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0명 중 1명의 급여가 오르면 고용증가율이 전년보다 2.2~3.4%포인트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6~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29인 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한편,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1988년 이후 노사가 제출한 이의제기 건수는 노동자측 10건, 사용자측 13건으로 총 23건. 그러나 고용부는 단 한 번도 이의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제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